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3. 04.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2022. 09. 07.
개정 2023. 04. 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규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자 선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자는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해당 용역업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업자를 평가할 경우 [별표]의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5)업체능력평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등)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 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

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 선정) ①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내·외부위원을 선정할 경우 평가위원 총원의 3배 이상 평가위원단(Pool)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는 평가위원 교섭순위를 결정하여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서 통보한 교섭순위별로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 선정보고를 시행하며, 선 순위 평가위원이 불참시 불참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이 총원에 미달하였을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평가위원의 제척・회피) 발주자 사업주관부서는 외부평가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 회피한다.

1. 평가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용역업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평가위원회 역할) ① 발주자가 구성・운영하는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2항에 따른 [별표]의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5)업체능력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2. 제4조 2항에 따른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② 제1항 1호에 대한 평가는 용역업자별로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1항 2호에 대한 검토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평가기준은 제4조 1항 2호에 따른 공고일 이후 추진계획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Ⅰ.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

평가항목 및 요소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계		100		
1. 환경영향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소 계	68		
	(1)자격 및 등급	14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
	(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	(3)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6)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5)		
	(2)경력	17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	(4)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6)		
	(3)실적	17	절대평가	추진계획공고일(이하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	(4)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6)		
	(4)업무여유도	17	절대평가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	(4)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6)		
	(5)교육훈련	2	절대평가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과업의 이해도	1	절대평가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7)이적계수		절대평가	최근 이적 사항 관련하여 이적계수비율 적용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소 계	32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수행건수	(7)		
	(나)수행금액	(7)		
	(2)신용도	9	절대평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가)불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나)재정상태건실도	(3)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절대평가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은 보호기간중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
	(가)개발실적	(2)		
	(나)투자실적	(2)		
	(다)활용실적	(2)		
	(4)공동도급	1	절대평가	공동도급의 최초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고,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가)제2종업체 공동수급	(0.5)		
	(나)소기업공동도급	(0.5)		
	(5)업체능력평가	2	상대평가	참여의향서 평가
	(6)하도급준수	-	(벌점)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7)청년고용	-	(가점)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후 1년 후부터 평가)
	(가) 1%이상	-		
	(나) 2%이상	-		
	(다) 3%이상	-		
	(8)평가사 고용가점	-	(가점)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 및 기준</th><th>배점</th></tr>
<tr><td rowspan="3">1. 참여자 능력평가</td><td>(1)자격 및 등급</td><td>○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의2 및「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하며,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를 준용한다.
<table>
<tr><th>구분</th><th>환경영향평가사</th><th>해당 기술사</th><th>특급 기술자</th><th>고급 기술자</th><th>중급 기술자</th><th>초급 기술자</th></tr>
<tr><td>사업책임 평가자(총괄)</td><td>10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분야별 책임평가자</td><td>-</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td></tr>
<tr><td>분야별 참여평가자</td><td>-</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90%</td></tr>
</table>
※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 분야별 인정범위([붙임1]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참조) 및 평가 인원수
○ 사업책임평가자(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 분야별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3인을 기준으로 평가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3인을 기준으로 평가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3), 분야별책임평가자(6), 분야별참여평가자(5)</td><td>[14]</td></tr>
<tr><td>(2)경력</td><td>○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7">경력년수</th></tr>
<tr><th>17년이상</th><th>15년이상</th><th>13년이상</th><th>10년이상</th><th>9년이상</th><th>7년이상</th><th>7년미만</th></tr>
<tr><td>사업책임 평가자(총괄)</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r>
<tr><td>분야별 책임평가자</td><td>100%</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r><td>분야별 참여평가자</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90%</td><td>80%</td></tr>
</table>
※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4), 분야별책임평가자(7), 분야별참여평가자(6)</td><td>[17]</td></tr>
<tr><td>(3)실적</td><td>○ 용역참여기술자의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붙임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참조)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실적건수</th></tr>
<tr><th>15건이상</th><th>13건이상</th><th>11건이상</th><th>9건이상</th><th>9건미만</th></tr>
<tr><td>사업책임 평가자(총괄)</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70%</td></tr>
<tr><td>분야별 책임평가자</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70%</td></tr>
<tr><td>분야별 참여평가자</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90%</td></tr>
</table>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용역참여기술자의 해당용역 수행률(%, 경력증명서 참여기간/용역기간)을 적용하여 평가
○ 실적계수([붙임2]실적계수 참조) 적용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4), 분야별책임평가자(7), 분야별참여평가자(6)</td><td>[17]</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 및 기준</th><th>배점</th></tr>
<tr><td rowspan="4">1. 참여자 능력평가</td><td>(4)업무여유도</td><td>○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은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를 의미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Σ〔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일수/총계약기간)/10인)〕
※ 3개월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 및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세부배점 : 사업책임평가자(4), 분야별책임평가자(7), 분야별참여평가자(6)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배점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한다.</td><td>[17]</td></tr>
<tr><td>(5)교육훈련</td><td>○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table><tr><th>구분</th><th>배점</th></tr><tr><td>2주이상 교육이수</td><td>(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td></tr><tr><td>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td><td>(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td></tr></table>※ 공고일 이전 교육완료 필증만 실적으로 인정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td><td>[2]</td></tr>
<tr><td>(6)과업의 이해도</td><td>○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진행중인 전(前)단계 용역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 증빙 서류(기성률 확인) 제출 시 기성률(%)을 적용하여 평가
※ 전(前)단계 용역은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한 해당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용역이 없을 경우 만점 부여</td><td>[1]</td></tr>
<tr><td>(7)이적계수</td><td>○ 해당평가자별 참여자 능력평가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이적계수
<table><tr><th>구분</th><th>3개월 미만</th><th>3개월 이상~6개월 미만</th><th>6개월 이상</th></tr><tr><td>이적계수</td><td>0.8</td><td>0.9</td><td>1.0</td></tr></table>※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td><td></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 및 기준</th><th>배점</th></tr>
<tr><td rowspan="3">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td><td>(1)수행실적</td><td>○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붙임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참조)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tr><td rowspan="2">유사평가 실적건수</td><td>건수</td><td>10건이상</td><td>8건이상</td><td>6건이상</td><td>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배점</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r><td rowspan="2">유사평가 실적금액</td><td>금액</td><td>250%이상</td><td>200%이상</td><td>100%이상</td><td>50%이상</td><td>50%미만</td></tr><tr><td>배점</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 연차별 진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중, 용역기간 일부가 공고일로부터 5년 내에 포함된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 실적(금액)에 포함시킨다.
○ 실적계수([붙임2]실적계수 참조) 적용(수행건수 및 수행금액 적용)
○ 세부배점 : 수행건수(7), 수행금액(7)</td><td>[14]</td></tr>
<tr><td>(2)신용도</td><td></td><td>[9]</td></tr>
<tr><td>(가)부실평가자 및 부실 업체 등</td><td>○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td><td>(6)</td></tr>
<tr><td>(나) 재정상태 건실도</td><td>○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r><tr><td colspan="2">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 colspan="2">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 colspan="2">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 rowspan="2">배점</td><td>대기업/중기업</td><td>100%</td><td>80%</td><td>70%</td><td>0%</td></tr><tr><td>소기업</td><td>100%</td><td>90%</td><td>80%</td><td>0%</td></tr></table>※「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td><td>(3)</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 및 기준</th><th>배점</th></tr>
<tr><td rowspan="3">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td><td>(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td><td></td><td>[6]</td></tr>
<tr><td>(가)개발실적</td><td>○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내에서 가점한다.
○ 산출식 = Σ(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table><tr><th>구 분</th><th>신기술</th><th>특 허</th><th>실용신안</th><th>연구보고서*</th></tr><tr><td>계 수</td><td>1.0</td><td>0.6</td><td>0.3</td><td>0.1</td></tr></table>*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r><tr><td rowspan="2">계수</td><td>특 허</td><td>1.0</td><td>0.8</td><td>0.6</td></tr><tr><td>실용신안/
연구보고서</td><td>1.0</td><td>0.8</td><td>-</td></tr></table>※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td><td>(2)</td></tr>
<tr><td>(나)투자실적</td><td>○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table><tr><th>구분</th><th>1.5%이상</th><th>1.5% 미만
1.2% 이상</th><th>1.2% 미만
1.0% 이상</th><th>1.0% 미만
0.75% 이상</th><th>0.75% 미만
0.5% 이상</th></tr><tr><td>점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td><td>(2)</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 및 기준</th><th>배점</th></tr>
<tr><td rowspan="3">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td><td>(다)활용실적</td><td>○ 산출식 =∑(환경분야 1.0×A×B×C)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table><tr><th>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tr><td>활용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tr><td>활용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tr><td>가중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table><tr><th>구 분</th><th>신기술</th><th>특 허</th><th>실용신안</th></tr><tr><td>계 수</td><td>1.0</td><td>0.6</td><td>0.3</td></tr></table>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table><tr><th>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r><tr><td>특허, 실용신안</td><td>1.0</td><td>0.8</td><td>0.6</td></tr></table>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td><td></td></tr>
<tr><td>(4)공동도급</td><td>○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평가가 불가하여, 만점 부여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 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다.</td><td>[1]</td></tr>
<tr><td>(5)업체능력평가</td><td>○ 참여의향서 평가
- 평가기준(미제출시 “0”점 처리)
<table><tr><th>구 분</th><th>수</th><th>우</th><th>미</th><th>양</th><th>가</th></tr><tr><td>환산계수</td><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tr></table>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붙임4]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참조) 적용</td><td>[2]</td></tr>
</table>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6)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7)청년고용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 평균(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한다.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0.1 0.2 0.3
	(8)평가사 고용가점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여부 따라 가점 부여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평가사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 시 각 업체별 평가사 고용가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예) A사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지분 70% B사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지분 30% → (0.5×70%)+(0×30%) = 0.35점 ※ 본 가점은 2023.12.31.까지 적용	0.5

【붙임 1】 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분 야 별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평가	경력 및 실적평가
사업책임평가자(총괄)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 대기관리 1인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환경분야
분야별 참여평가자	○ 대기관리 1인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환경분야

주)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및 토양환경

【붙임 2】 실적계수

구 분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유사사업	1.0	1.0	0.6	0.6
기타사업	0.6	0.6	0.36	0.36

주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완료된 사업은 100%,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완료한 사업은 기성률(%)를 적용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결과통보서 제출 또는 준공된 사업은 100%, 진행중인 사업은 기성률(%)를 적용하여 평가

주2) 기성률(%) 인정 기준 : 발주자의 확인서, 대행계약서, 대금의 지급증빙 등 '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붙임 3】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구분	평 가 대 상
유사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외 화력발전소 시설에 관한 사업
기타사업	○ 동일/유사사업외의 기타사업

【붙임 4】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주)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아래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을 준용한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의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 을 적용한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총괄 평가자 포함 7인을 평가한다.

> □ **참여평가자 구성 : 7인**
> - 사업책임평가자(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1인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8.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

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한다.
    - 업체능력평가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용역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세부평가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제 본 : 양면 좌철
   - 지 질 : 표 지(백색 아트지) / 내용물(백상지, 경인쇄 공판)
   - 평가서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 (원본1부 포함)
   - 참여의향 평가서 : 7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5부는 별권(회사명 미기재)으로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참여의향 평가서 내용을 담은 파일 USB : 1개
3)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계약부 (우) 13585

다. 참가자격 : 추진계획 공고문 참조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이며, 공동도급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중 경력증명서, 관련실적 중 관련협회 확인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타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추진계획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평가서 작성은 당해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작성지침에 의하되 항목별로 색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색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5) PQ평가 중 "참여의향서 평가"는 서류평가(면접 제외)로 합니다.

6)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평가기준 등과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관련 법령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본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원본/부본)	
관리 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 역 명 : _____

20○○. .

참여업체명 :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작 성 순 서>

1. 용역참여신청서 ····· (양식 1)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 ····· (양식 3)
4. 참여평가자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 (양식 4)
   4.2 참여평가자 총괄표 ····· (양식 5)
   4.3 참여평가자 경력 및 실적 ····· (양식 6)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양식 7)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 ····· (양식 8)
   4.6 과업의 이해도 ····· (양식 9)
   4.7 이적계수 ····· (양식10)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5.1 업체의 수행실적 ····· (양식11)
   5.2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 (양식12)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 (양식13)
   5.4 재정상태건실도 ····· (양식14)
   5.5 기술개발 실적 ····· (양식15)
   5.6 기술개발 투자실적 ····· (양식16)
   5.7 기술개발 활용실적 ····· (양식17)
   5.8 공동도급 현황 ····· (양식18)
   5.9 하도급 준수여부 ····· (양식19)
   5.10 청년고용 현황 ····· (양식20)
6. 자기평가서 ····· (양식21)
7. 각　　서
   7.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 (양식22)
   7.2 청렴 서약서 ····· (양식23)

❑ 참여의향서 (별본)

1. 참여의향서 ····· (양식24)

[양식 1]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제 목 : **"용역명 기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아래의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용 역 명 : _____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끝.

20○○ . .

상 호 또 는 명 칭 :
법인(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3]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환경분야
계		
환경영향평가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작성요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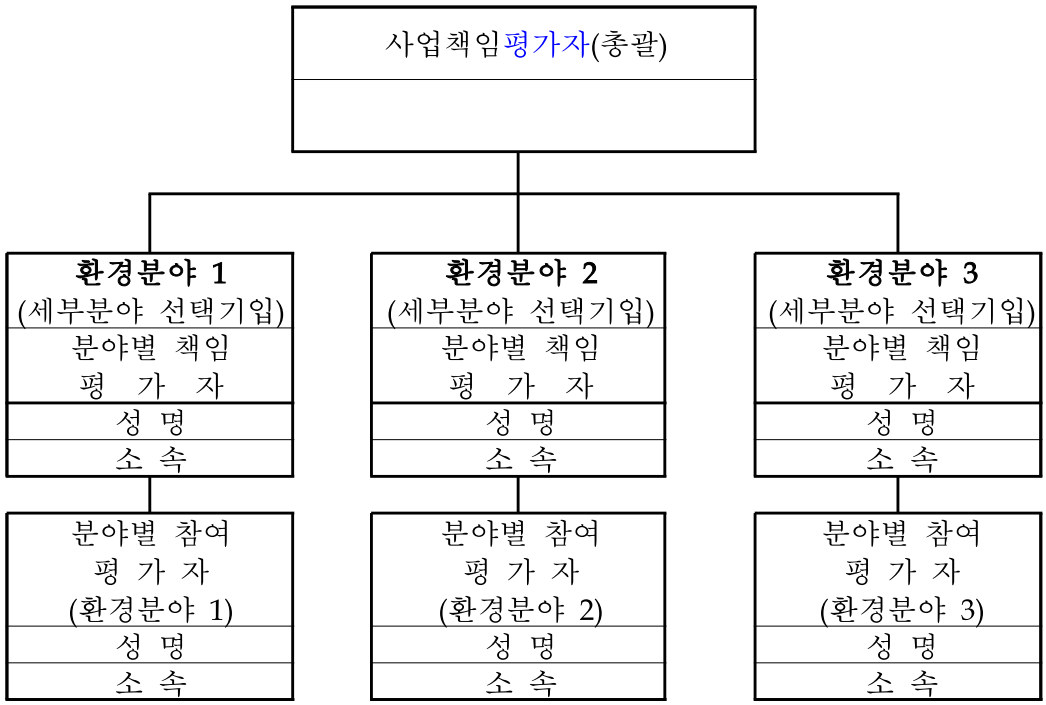
① 기술자의 구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에 의함.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4. 참여평가자

[양식 4]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주) 1. 사업책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에 한한다.

2. 사업책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3.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는 각각 1인만 기재한다.

- 분야별 책임평가자(3인)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3인) :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4.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이행계획에 따라 분야별책임평가자와 분야별참여평가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함)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평가자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A사,70%)	B사(30%)
산출방법	7명	7명 × 70% = 4.9≒ 5명	7 명× 30 % = 2.1 ≒ 2명

[양식 5]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4.2 참여평가자 총괄표
(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구 분	성 명	연령	최종 학력 (학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		경력 (연수)	실적 (건수)	이직일 (일수)
					종류	취득일			
사업책임 평가자									
○ ○ 분 야 책 임 평가자									
○ ○ 분 야 책 임 평가자									
○ ○ 분 야 책 임 평가자									
○ ○ 분 야 참 여 평가자									
○ ○ 분 야 참 여 평가자									
○ ○ 분 야 참 여 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② 경력난에는 4.3양식에 따른 년수로 기재
③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에는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양식 6]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4.3 참여 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참여분야 :)

일반사항	성 명		소 속		본 과 업 참여직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 )학과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년 월 일	
	기술자 등급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기 타					

– 경력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평가 구분	계수	참여기간					
					용역기간		경력기간 (중복일 제외, 실 경력기간)		참여 일수	적용 일수
					착수일	준공일	시작일	종료일		
			기타	*0.6*	*08.01.01*	*11.12.31*	*08.01.01*	*10.12.31*	*1,095*	*657*
			환경	*1.0*	*11.01.01*	*14.12.31*	*11.01.01*	*14.12.31*	*1,460*	*1460*
			기타	*0.6*	*13.01.01*	*15.12.31*	*15.01.01*	*15.12.31*	*364*	*218*
	계									*2,335일 6.4년*

– 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발주처	용역기간 ①		참여기간 ②		수행률 (②/①)	실적계수	계수적용 건수
				착수일	준공일	시작일	종료일			
				08.01.01	*11.12.31*	*08.01.01*	*11.12.31*	*1.0*	*0.6*	*0.6*
				11.01.01	*14.12.31*	*11.01.01*	*12.12.31*	*0.5*	*0.6*	*0.3*
	계									*0.9건*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우리공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해당전문분야중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조사등)을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 경력은 해당전문분야로 평가하며,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⑥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서식 제14호]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

※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 이적계수는 자격/경력/실적 산정시 반영

[양식 7]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총괄표 -

(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구 분		성 명	중복금액	점수	비 고
사업책임 평가자					4.00/인
○ ○ 분 야	책 임 평가자				2.33/인
○ ○ 분 야	책 임 평가자				2.33/인
○ ○ 분 야	책 임 평가자				2.33/인
○ ○ 분 야	참 여 평가자				2.00/인
○ ○ 분 야	참 여 평가자				2.00/인
○ ○ 분 야	참 여 평가자				2.00/인
계				점	0.01 가산

- 업무여유도 -

(참여분야 : , o o o , 여유도 산정 기준일 : 20○○ . .)

NO	사 업 명	발 주 처	참여 분야	계약 금액 (백만원)	총 계약 기간			1년이내 잔여일수	중복 금액 (백만원)	비고
					계약일	준공 예정일	계약 일수			
1					*00.00.00*	*00.00.00*				
2										
3										
	계								000.0	

〈작성요령 등〉

①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 신고된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단, 2016.1.21.(환경부 고시 시행일)이전에 계약된 용역은 분야 책임기술자이상으로 참여한 경우만 평가하고 2016.1.22.이후 계약된 용역은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도 평가. 또한 2016.1.21.이전에 계약되었더라도 2016.1.22.이후에 변경되어 투입된 경우는 업무여유도로 평가)

② 계약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계약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③ 잔여일수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

④ 기타 업무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필히 첨부

[양식 8]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참 여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훈련기관	기술사자격 보유여부
				시작일	종료일	교육기간 (단위 : 주)		
총괄 평가자				*00.00.00*	*00.00.00*	*3*		
				00.00.00	*00.00.00*	*2*		
				00.00.00	*00.00.00*	*1*		
○○ 분야	책임 평가자							
○○ 분야	책임 평가자							
○○ 분야	책임 평가자							
○○ 분야	참여 평가자							
○○ 분야	참여 평가자							
○○ 분야	참여 평가자							

〈작성요령 등〉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환경기술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증빙서류 첨부)

[양식 9]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4.6 과업의 이해도

참 가 분 야	성명	용역명	준공일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 분야
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 전차용역을 수행한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를 첨부한다.

[양식 10]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4.7 이적계수

참 가 분 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이적경과일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여부	이적계수	비 고
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자료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양식 11]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5.1 업체의 수행실적

- 총괄표(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참여당시 지분율** 적용 수행실적		**당해참여 지분율**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계					
배점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중 우리공사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

② 완료된 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용역(기성률 적용) 각각 작성(세부양식 참조) 후 합계로 기입

③ 용역기간은 날짜까지 기재

④ 완료된 용역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 또는 발주관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

⑤ 수행중인 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서, 대행계약서, 대금의 지급증빙 등 '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하여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서 제출

1) 업체수행실적(완료된 용역)

(회사명 : , 지분율 %)

(백만원, 건)

연번	사 업 명	발주자	실적 계수 ①	용역기간		준공금액		참여당시 지분율 (%) ③	당해참여 지분율 (%) ④	적용 건수 (①×③×④)	적용 금액 (①×②×④)	비고
				착수일	준공일	전체	지분 금액 ②					
1			*1*				*100*	*70%*	*50%*	*0.35*	*50*	
2			*0.6*				*200*	*60%*	*50%*	*0.18*	*60*	
3												
소계										***0.53***	***110***	

2) 업체수행실적(수행중인 용역)

(회사명 : , 지분율 %)

(백만원, 건)

연번	사 업 명	발주자	실적 계수 ①	용역기간		기성금액			당해참여 지분율 (%) ④	적용 건수 (①×③÷②×④)	적용 금액 (①×③×④)	비고
				착수일	준공일	계약 금액 ②	지분금액					
							계약 금액	기성 금액 ③				
1			*1*			*200*	*100*	*70*	*50%*	*0.18*	*35*	
2			*0.6*			*200*	*200*	*100*	*100%*	*0.3*	*60*	
3												
소계										***0.48***	***95***	

[양식 12]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5.2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 역 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작성요령 등〉

① 용역업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공동도급시 총괄표 첨부

⑤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가 없을시 '한국건설관리협회'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3]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성 명 (참여분야)	용 역 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작성요령 등〉

① 참여평가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가 없을시 '한국건설관리협회'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4]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5.4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년 월 일)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를 첨부한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양식15]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5.5 기술개발 실적

구분	건명	분야	기술 내용	최초 출원일	경과 기간	최초 출원인	보유 지분율	참여 지분율	적용 점수	비고
신기술 (1.0)										
특허 (0.6)										
실용 신안 (0.3)										
연구 보고서 (0.1)										
계										

〈작성요령 등〉

①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② 자체개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하고,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으로 기재

③ 참여 지분율은 최초출원 인수로 나누어 산출

④ 해당분야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만 인정

⑤ 특허등록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⑥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⑦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미첨부시 불인정)

⑧ 등록원부에 선등록으로 등재된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양식 16]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5.6 기술개발 투자실적(최근 3년간)

년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 출 액 에 대한 비율(%)	비 고
합 계				
평 균				

①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총매출액(손익 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 만 인정

②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③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7]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5.7 기술개발 활용실적

(분야 : ○○)

구분	업체명	명칭	분야	활용실적		경과 기간	비고
				건수	금액(백만원)		
신기술 (1.0)							
	소 계						
	소 계						
특허 (0.6)							
	소 계						
	소 계						
실용 신안 (0.3)							
	소 계						
	소 계						
계							

① 분야 : 개발기술 분야(“환경”, “기타”) 구분 기재(환경분야만 인정)
②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③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증명서 첨부
④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⑤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⑥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⑦ 금번 용역에 공동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⑧ 특허 및 실용신안은 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 시공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되 경과기간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⑨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양식 18]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5.8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비 고
제1종업체↔제2종업체				
제1종업체↔소기업				

〈작성요령 등〉

①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평가가 불가하여, 만점 부여

- 제1종업체↔소기업(1종,2종) 공동도급 : 0.5

②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③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④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다.

[양식 19]

5.9 하도급 준수여부 (최근 3년간)

구 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벌 점	누계 벌점	비 고
대표사					

〈작성요령 등〉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름.
- 최근 3년간 위반내용 기재(공정거래위원회 확인서류 첨부)

○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 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

※ 단,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서류를 첨부시 인정

[양식 20]

5.10 청년고용 현황

구 분	신규기술인력의 합 (최근 3년간)	기술인력의 연평균 (최근 3년간)	신규고용률 (%)	비 고
청년고용현황				

〈작성요령 등〉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한다.

- **환경영향평가 경력/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후 1년후까지 미적용함.**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연 평균(공고일 기준)

※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규인력의 합 및 기술인력의 평균값에 대한 증빙서류 별첨.

6. 자기평가서

[양식 21]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6. 자기평가서

(회사명:)

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총 계				100.0	
1. 참여자 능력 평가	계			68.0	
	(1)자격 및 등급	총괄		3.0	
		분야별책임(계)		6.0	
		(성명)			
		〃			
		〃			
		분야별평가(계)		5.0	
		(성명)			
		〃			
		〃			
	(2)경력	총괄		4.0	
		분야별책임(계)		7.0	
		(성명)			
		〃			
		〃			
		분야별평가(계)		6.0	
		(성명)			
		〃			
		〃			
	(3)실적	총괄		4.0	
		분야별책임(계)		7.0	
		(성명)			
		〃			
		〃			
		분야별평가(계)		6.0	
		(성명)			
		〃			
		〃			
	(4)업무여유도	총괄		4.0	
		분야별책임(계)		7.0	
		(성명)			
		〃			
		〃			
		분야별평가(계)		6.0	
		(성명)			
		〃			
		〃			

구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1. 참여자 능력 평가 (계속)	(5)교육훈련			2.0	
	(6)과업이해도			1.0	
	(7)이적계수	감점대상만 작성			- 0.0점
2.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계		32.0	
	(1)수행실적	(가)건 수		7.0	
		(나)금 액		7.0	
	(2)신용도	(가)부실업체 등		6.0	
		(나)재정상태		3.0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개발실적		2.0	
		(나)투자실적		2.0	
		(다)활용실적		2.0	
	(4)공동도급			1.0	
	(5)업체능력평가	상대평가		2.0	(미기재)
	(6)하도급준수	(벌 점)			
	(7)청년고용	(가 점)			
	(8)평가사 고용가점	(가 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서식이 부족할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7. 각 서

[양식 22]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7.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당 사는 귀 公社에서 발주한 “ **(용역명 기재)** ”에 참여함에 있어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귀 公社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귀 公社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양식 23] ※ 작성은 EXCEL 양식으로 작성

7.2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대표사)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서약자(공동이행)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한국지역난방공사 귀하

※ 참여회사(대표이사) 전체 작성

❑ 참여의향서

(별본 제출)

[양식 24]

1. 참여의향서

※ 작성 분량 : 3쪽 이내 작성

※ 작성 양식

- 쪽 여백 : 위·아래:15mm, 오른쪽·왼쪽:20mm, 머리말·꼬리말:10mm
- 글자 : 글자모양 설명 참조하여 검정색으로 작성

※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출할 것

참여의향서

(000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구 분	

20○○. .

업체명 표시 금지

1. 제목 1 (HY헤드라인M 15pt)

가. (휴먼명조 14pt, 진하게)

○ (휴먼명조 13pt)
- (휴먼명조 13pt)

나.

○ (휴먼명조 13pt)
- (휴먼명조 13pt)

2. 제목 2 (HY헤드라인M 15pt)

가. (휴먼명조 14pt, 진하게)

○ (휴먼명조 13pt)
- (휴먼명조 13pt)

나.

○ (휴먼명조 13pt)
- (휴먼명조 13pt)

3. 제목 3 (HY헤드라인M 15pt)

가. (휴먼명조 14pt, 진하게)

○ (휴먼명조 13pt)
- (휴먼명조 13pt)

나.

○ (휴먼명조 13pt)
- (휴먼명조 13pt)